

제226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6. 12. ~ 6. 26.)

조 례 안 상 정

(조례 6건)

거 창 군 의 회

--- 목 차 ---

| 의안 번호 | 건 명 | 쪽수 |
|----------|---|----|
| 2017-55 |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 2017-56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16 |
| 2017-57 |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2 |
| 2017-58 |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
| 2017-59 |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41 |
| 2017-60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55 |
|----------|-----------|

| | |
|-------|------------|
| 발의일자 | 2017. 5. . |
| 발 의 자 | 박희순 의원 외 |

1. 제안이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 (안 제3조제2항)
- 나.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1항)
- 다. 보상심의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45조, 동법령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2017. 6. 1. ~ 6. 7.
 - (나) 예고결과: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의원"을 "경남도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경우가"를 "각 호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그"를 "심의회"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첨부서류란의 중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를 “ 1.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p> <p>① (생략)</p> <p>1. ~ 3. (생략)</p> <p>4. <u>기타</u>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p> <p>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u>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u></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략)</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시·도의원</u>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시·도의원</u>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p> <p>3. <u>기타</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1항 <u>각 호의 경우가</u>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p> <p>② ----- ----- 「<u>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u>」 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 ----- ----- <u>경남도의원</u> -----</p> <p>2. ----- <u>경남도의원</u> -----</p> <p>3. <u>그 밖에</u> -----</p> <p>② --- <u>각 호가</u> -----</p>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략)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생략)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생략)

1. ~ 3. (생략)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소집하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 "장애등급"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심의결과에 따라 -----

제10조(심의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

고 그 의장이 된다.<신 설>

② (생략)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심의회 -----.다만, 심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접수 | 계호 |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 | | 처리기간 |
| 보상대상의원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청구자 | 주소 | | | 전화번호 | |
| | 청구내용 | □ 사 망 □ 장 애 □ 상 해 | | | |
| | 보상금수령금용기관 | 은행지점 | 계좌번호 | | |
| 상병장소 | | | | 상병연월일시 | |
| 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 | | | | | |
| <p>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p> | | | | | |
| <p>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u>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u>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u>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u>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p> | | | | | |
| <p>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의회의장 (직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귀 하</p> | | | | |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

그 밖에 -----.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접수 | 계호 |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 | | 처리기간 |
| 보상대상의원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청구자 | 주소 | | | 전화번호 | |
| | 청구내용 | □ 사 망 □ 장 애 □ 상 해 | | | |
| | 보상금수령금용기관 | 은행지점 | 계좌번호 | | |
| 상병장소 | | | | 상병연월일시 | |
| 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 | | | | | |
| <p>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p> | | | | | |
| <p>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u>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u>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u>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u>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p> | | | | | |
| <p>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의회의장 (직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귀 하</p> | | | | |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이 새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 또는 부상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이나 그 현저한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상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28.]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

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4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권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5조 삭제 <2005.6.30.>

제6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에 따라 기여금·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자료를 공단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여금 납부사항
2. 과납·미납 정산사항
3.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전문개정 2012.3.9.]

제7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임용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

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금가입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8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여금·반납금 등의 납입사항
2.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
3. 대여학자금 및 공단이 실시한 대부 관련 사항
4. 공단의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입주 등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2.3.9.]

제9조(연금정보의 열람) 연금취급기관장과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10조 삭제 <2004.8.5.>

제11조 삭제 <2016.8.1.>

제12조 삭제 <2016.8.1.>

제13조 삭제 <2016.8.1.>

제14조 삭제 <2016.8.1.>

제15조(중과실 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2.3.9.]

제16조(공무상 재해여부의 확인 등) 공단은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영 제46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또는 영 제5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 급여사유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청구인·연금취급기관장·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17조(진단요구) ① 공단은 요양관리와 장애 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국립·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18조(실비 지급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19조 삭제 <2001.2.28.>

제20조(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 질병·부상의 확인) 공단은 영 제31조에 따른 공무원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된 질병·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에 따른 공무원요양비를 지급할 때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양자문위원(이하 "요양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21조(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영 제30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요양 승인, 공무원 요양기간연장 승인, 공무원 재요양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간호·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제22조(장애인정기준) ① 장애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 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애의 확정일은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

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본다.

[전문개정 2012.3.9.]

제23조(장애상태의 분류 및 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은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9.]

제24조(장애등급의 결정) ① 영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保存的)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상태가 영 별표 3의 장애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발생 부위 및 양태와 신체 부위별 장애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5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①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1.>

[전문개정 2012.3.9.]

제26조(장부의 비치)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제27조(통계의 작성·유지) 공단은 비용 징수 및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9.]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56 |
|----------|-----------|

| | |
|-------|------------|
| 발의일자 | 2017. 5. . |
| 발 의 자 | 박희순의원 외 |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5조제1항제6호)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부터 제42조 까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6. 1 ~ 6. 7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57 |
|----------|-----------|

| | |
|-------|------------|
| 발의일자 | 2017. 5. . |
| 발 의 자 | 박희순의원외 명 |

1. 제안이유

○ 거창군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위치(안 제3조)
- 라. 운영 및 기능(안 제4조, 안 제5조)
- 마. 회원 등록 및 의무(안 제6조, 안 제7조)
- 바. 연회비 납부 및 반환, 면제(안 제8조, 안 제9조)
- 사. 이용제한(안 제10조)
- 아. 회원 등록 취소(안 제11조)
- 자. 대여기간 및 수량 등(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136조, 제139조, 제144조
- 나. 예산조치: 2017년 45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6. 1. ~ 6. 7.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반영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군 장난감은행”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대여하거나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거창군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 ② 군수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
2.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회원 등록)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매년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연회비의 반환기준 및 절차 등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연회비의 면제) 군수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은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등 또는 장난감은행의 시설물·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
2.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창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회원이 등록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장난감등을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계정(아이디)이나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장난감등의 대여 기간과 수량,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장난감은행 설치, 장난감 구입
-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차년도 (2017년) | 2차년도 (2018년) | 3차년도 (2019년) | 4차년도 (2010년) | 5차년도 (2021년) | 합계 |
|-------------|-----------------|-----------------|-----------------|-----------------|-----------------|-----|
| 총 비용(a - b) | 450 | - | - | - | - | 450 |
| 세출 균비(a) | 450 | - | - | - | - | 450 |
| 세입 균비(b) | 450 | - | - | - | - | 450 |

3. 관련 의견

- 장난감은행 설치를 통해 장난감 무료대여와 유아놀이 공간 제공으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장난감은행 리모델링 : 250백만원
- 기자재 및 장난감 등 구입 : 200백만원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2.~3.(생략)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5.(생략)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

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3.(생략)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
|----------|--------|

| | |
|-------|------------|
| 발의일자 | 2017. 5. . |
| 발 의 자 | 강철우 의원 외 |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다.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규제개혁담당), 환경과(환경정책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5. . ~ 5. .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전국 제정완료(1): 강원도 영월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농도가 『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군민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7조 관련)

| 예보내용 | | 등급($\mu\text{g}/\text{m}^3$) | | |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예보 물질 | 미세먼지 (PM-10) | 0 ~ 30 | 31 ~ 80 | 81 ~ 150 | 151 이상 |
| | 미세먼지 (PM-2.5) | 0 ~ 15 | 16 ~ 50 | 51 ~ 100 | 101 이상 |
| 행동 요령 | 민감군 | - | · 실 외 활 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 있음. | · 가급적 실내 활동(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
| | 일반인 | - |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溜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7호, 2016.12.27., 일부개정]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2.2.1., 2012.5.23., 2016.1.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2.2.1., 2013.4.5.>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21., 2012.2.1., 2013.4.5., 2016.1.27.>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4.5., 2016.12.27.>
-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7.>
-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12.27.>
- 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12.27.>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
|----------|--------|

| | |
|-------|------------|
| 발의일자 | 2017. 5. . |
| 발 의 자 | 최광열 의원 외 |

1. 제안이유

- 「사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개설을 위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함(안 제2조)
 -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차선평폭 3.0미터, 길어깨 0.5미터)이상의 도로 구조기준으로 적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건설과(도로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5. . ~ 5. .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완료(7): 거제, 김해, 사천, 고성, 남해, 하동, 함안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사도법」

[시행 2015.10.25.] [법률 제13434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전문개정 2012.12.18.]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타법개정]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0.22.>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11.1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 2.~3. 삭제 <1995.7.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 6.~11. (생략)
12.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20. (생략)

제5조 (차선 및 차도) ①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구분 | 차선수 |
|----|-----|
| 면도 | 2 |
| 리도 | 1 |
| 농도 | 1 |

②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향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향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향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구분 | 차선향(미터) |
|----|---------|
| 리도 | 5.0 |
| 농도 | 3.0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길어깨)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 구분 |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
| 면도 | 1.0 | 0.5 |
| 리도 | 0.75 | 0.5 |
| 농도 | 0.5 | - |

-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8., 2010.10.14.>
- ⑦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깨의 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 ~ |
|----------|--------|

| | |
|-------|------------|
| 발의일자 | 2017. 5. . |
| 발 의 자 | 형남현 의원 외 |

1. 제안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에 따른 시행 전의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안 제2조)
- ※ 적용: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도시건축과(도시계획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5. . ~ 5. .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4): 사천, 산청, 함양, 고성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조례 제2376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부칙(조례 제2376호 일부개정 '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p> | <p>부칙(조례 제2376호 일부개정 '17.5.10.) 제1조(시행일) ----- -----.</p> <p><u>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p>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

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개정 2016. 6. 30.>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 기준 |
|---------|---|
| 가. 공통분야 |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
|--------------|---|
| | <p>(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
| 나. 도시·군관리계획 | <p>(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닐 것</p> |
| 다. 도시·군계획사업 | <p>(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닐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p> <p>(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닐 것</p> |
|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p>(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닐 것</p> |
| 마. 기반시설 | <p>(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닐 것</p> <p>(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p> <p>(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p> |
| 바. 그 밖의 사항 | <p>(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p> <p>(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닐 것.</p>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 허가 기준 |
|-----------------------|--|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p>(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p> <p>(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나. 토지의 형질변경 | <p>(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흠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p> <p>(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p> |
| 다. 토석채취 | <p>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라. 토지분할 | <p>(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p> <p>(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p> <p>(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p> |

| | |
|-----------------------|--|
| | <p>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토지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p>(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p>(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p> |
| <p>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 <p>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 검토 분야 | 허가 기준 |
|--------------|--|
| 가. 시가화 용도 |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나.유보용도 |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다.보전용도 |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1.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3. 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